

의안번호	제 376 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월 일 (제 314 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2년 8 월 31 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6
----------	-----

제출연월일 : 2012년 8 월 31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행정환경변화와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시군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 신설 : 13건

- 동물의 구조·보호 등에 대한 사무 (8건) : 축산과
-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사항 (2건) : 환경정책과
- 수처리제 제조업 위반사실 등의 공표 (1건) : 수질관리과
- 화물자동차에 관한 권한 (2건) : 교통물류과

나. 위임범위 조정 : 1건

-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단서 삭제) : 기업유치지원과
※ 단서 : 다만,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일반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다. 관계법령 정비 등 : 9건

- 관계법령 정비 : 3건
 - 수처리제 제조업에 관한 권한(2건) : 수질관리과
 - 화물자동차에 관한 권한(1건) : 교통물류과
- 기타 일련번호 정비 : 6건 (환경정책과)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기업유치지원과, 축산과, 환경정책과, 수질관리과, 교통물류과” 소관분야 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기업유치 지원과	1	· 일반산업단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축산과	1	· 도축장외에서 도살·처리한 가축의 신고 수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
	2	·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관리 약사 변경신고의 수리	약사법 제45조제2항,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0조
	3	· 동물의 구조·보호 등에 대한 사무 가.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나.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다.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공고 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반환 마. 보호비용 청구 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소유권 취득 사.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분양·기증 아.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동물보호법 제14조 동물보호법 제15조 동물보호법 제17조 동물보호법 제18조 동물보호법 제19조 동물보호법 제20조 동물보호법 제21조 동물보호법 제22조
환 경 정 책 과	1	· 대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및 고시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도에서 설치하는 대기측정망은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5조
	2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같은법 제17조
	3	· 연료용 유류에 관한 다음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중 아스콘 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범위에 포함) 가.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나.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승인	같은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제42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다음사항 가. 신고 및 변경신고 나. 이행 또는 개선명령,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 사용제한 명령 	<p>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같은법 제43조제2항,제3항</p>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조치명령 	<p>같은법 제44조제1항,제2항, 제7항</p>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 	<p>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제1항</p>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의 취소 등 행정처분 	<p>대기환경보전법 제69조</p>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 및 검사 등 	<p>같은법 제82조</p>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의 부과 징수(단,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과 지방환경청장 및 유역환경청장의 권한 제외) 	<p>같은법 제94조</p>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제조치의 이행명령, 대집행 	<p>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제4항</p>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사항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 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중 수질3종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 관리 나. 측정기기 부착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p>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2항 같은법 38조의3제1항 제2항</p>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채취, 서류·시설·장비 검사의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 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1·2종 사업장중 아스콘 제조 시설 및 일반보일러 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 	<p>같은법 제68조</p>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환경보전법 위반행위조사확인, 과태료 납부 통보, 의견진술의 기회 제공 등 조치 	<p>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p>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 관련 다음 사항 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 여부 판단 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명령 	<p>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같은법 제27조</p>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 법령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라.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수리 사.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아.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전산기록관련 자료요구 자. 폐기물 재활용신고 수리 차.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카. 청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폐기물 보관량의 변경 및 보관·처리 기간의 연장승인 하.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및 시설의 승인·변경 승인 및 통보 거. 허가증의 재교부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제32조제2항 같은법 제33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제45조 같은법 제46조 같은법 제48조 같은법 제61조 같은법 제6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15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나.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등의 개선 명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16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건설폐기물의 임시 보관장소 (변경) 승인 나.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 여부 판단·통보 및 허가 (변경허가) 다.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 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취소·영업 정지 및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16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같은법 제21조, 제22조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25조, 제26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신고 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수리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 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 아. 의제처리를 위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및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수리 ·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 사항 중 다음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공급계획서 및 공급변경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 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용연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고형 연료제품 사용신고서 접수에 관한 사무 다.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다이옥신 배출 기준 초과 시 통보서 접수에 관한 사무 라.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고형 연료 제품 사용을 중지한 자가 다시 사용하려 할 경우, 시설의 개선내역, 다이옥신 검사 결과, 고형연료 제품 사용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제29조 같은법 제30조 같은법 제31조, 제33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0조의6 별표8 “ “ “
수 질 관리과	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물 관리와 관련한 다음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는 제외) · 수처리제 제조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영업의 휴업·폐업·재개업 등의 신고 수리 다. 영업허가 등의 제한 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마.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바. 출입·검사·수거 등 사. 지도 및 개선명령 아. 사업장 폐쇄 조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2항 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2항 같은법 제21조제7항 같은법 제24조 같은법 제25조제3항 같은법 제41조 제2항 같은법 제42조 같은법 제45조 같은법 제46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 폐기처분 등 차.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카. 청문 타.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파. 위반사실 등의 공표 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 유통샘물관련사업장의 출입·검사·수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법 제47조 같은법 제48조 같은법 제50조 같은법 제51조 제1항,제3항 같은법 51조의2 같은법 61조제2항,제3항 먹는물관리법 제42조
교통물류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나.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및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등 다. 자동차신규등록, 등록증교부 및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착봉인 등 라. 자동차변경·이전, 말소등록의 처리 및 수출이행 여부신고와 말소 사실증명서 교부 마. 자동차압류등록의 처리 바.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사.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개선명령, 지정취소, 사업정지 명령 아. 임시운행허가 및 허가증, 번호판 교부와 반납처리 자.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처리 차.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운행정지 명령 및 임시 검사명령 카.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 타.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2조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같은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자동차관리법 제14조 자동차관리법 제16조 같은법 제20조, 제21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자동차등록령 제31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조종사면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설기계조종사 신고의 수리 나. 조종사의 면허발급 및 면허증 재교부 다. 조종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같은법 제26조 같은법 제28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등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기계등록 및 등록증교부 나. 등록사항의 변경, 이전, 갱정처리 다. 등록말소 및 확인서교부 라.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 신청의 처리 마. 등록번호표의 반납 바. 식별곤란등록번호표의 재재검 명령등 사. 등록번호표제작사 지정 및 변경 신고수리, 지정 취소 아. 보고 및 검사 자.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신청 처리 차. 건설기계저당권 등록 카. 매매용건설기계의 신고 타.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파. 건설기계사업(대여, 매매업) 등록의 수리 하. 건설기계사업의 변경신고 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같은법 제3조, 제5조 같은법 제6조 같은법 제7조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제11조 같은법 제8조의2 같은법 제35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같은법 제34조의2 같은법 제21조 같은법 제24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승용·승합자동차의 사용제한 및 사용 금지 나. 화물자동차사용신고, 변경신고, 폐지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및 효력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의 사용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면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제1항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나. 공사시행의 인가 등 다. 공사의 완성 라. 사용개시 마. 사용약관 인가 바. 시설사용료 인가, 변경 사.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위반 시정명령 아. 터미널의 관리 자. 위치·규모·구조 설비의 변경 차. 사업개선 명령 카. 사용명령 타.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상속 휴지 및 폐지 파. 면허의 취소 하. 과징금 처분 거. 청문 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조합설립 더. 조합의 정관규정 및 변경 러. 정관변경 등의 명령 머. 재정지원, 조합감독 버. 공사시행인가, 시설확인 시 관계 행정 기관장간의 협의 및 통보	같은법 제38조 같은법 제38조제4항 같은법 제39조 같은법 제40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42조제3항 같은법 제42조 같은법 제43조 같은법 제44조 같은법 제45조 같은법 제48조 같은법 제85조 같은법 제88조 같은법 제86조 같은법 제53조 같은법 제54조 같은법 제56조 같은법 제50조, 제57조 같은법 제47조제3항, 제4항
	9	· 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 신고 처리 나.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 허가 다. 임대 자가용 화물 자동차반환 신고처리 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마. 신고포상금 지급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법 제56조 같은법 제56조 같은법 제40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10 같은법 제6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2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업의 등록 나. 대여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다. 사업관리 위탁허가 라. 사업개선명령 마. 사업계획변경등록 바.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수리와 법인 합병신고 수리 사. 사업의 상속신고 수리 아. 사업의 휴지·폐지신고 수리 자. 사업등록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차. 청문 카. 과징금부과·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 수립·시행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p> <p>같은법 제31조</p> <p>같은법 제32조</p> <p>같은법 제33조</p> <p>같은법 제10조제2항, 제35조</p> <p>같은법 제14조제1항, 제35조</p> <p>같은법 제15조제1항, 제35조</p> <p>같은법 제16조제2항, 제35조</p> <p>같은법 제85조</p> <p>같은법 제86조</p> <p>같은법 제88조</p> <p>같은법 제94조</p>

관계법령 발췌

< 공 통 >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기업유치지원과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지식경제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산업시설에 입주하기 위하여 조성한 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등"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설립요건을 위반한 경우
3.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관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기관을 입주 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관리공단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관리권자"로 본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① 법 제2조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2.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에 관한 업무
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8.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9. 환경 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10. 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 축 산 과 >

□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2.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 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4.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6. 제39조제1항제3호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7. 특별한 사유 없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⑦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공고)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제14조제1항 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20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도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3.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동물의 분양·기증) ① 시·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증·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따른 처리는 수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환경정책과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적산유량계·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부착시기 및 그 밖에 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 ①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②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당해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 수질관리과 >

□ 먹는물 관리법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①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수처리제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조사서의 심사.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6조, 제47조, 제48조 또는 제51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먹는물 관련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업체명과 제품명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 교통물류과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차량소유자·계약기간,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체결·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2. 제11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63조(권한의 위임) ③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운송사업자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 간 금전지급에 관한 분쟁
2.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차량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
3.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차량의 대폐차에 관한 분쟁
4.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분쟁의 성격·빈도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2. 화물운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물류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직 중인 연구원 또는 교수
4. 그 밖에 화물운수 및 분쟁해결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의 성격·빈도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① 법 제60조의2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10만원

2.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15만원

3. 법 제6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20만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